

2011.08.16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8월 10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「2010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2010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주요 결과

- 주요 13개 작목별 상·하위 20% 농가의 소득 격차는 2.4배~9.5배
- 기술수준 향상으로 수량성 높이고, 경영능력 개발로 수취가격 제고 필요
- 총 58개 조사 작목중 '09년산 대비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가을배추, 대파 등 35개 작목이고,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참다래, 녹차 등 12개 작목
 - 특히 노지채소 소득증가가 뚜렷했는데 이는 '10년산이 '09년산에 비해 수량이 감소하고 경영비도 증가하였으나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전체 소득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
- 13개 주요 농산물의 상·하위 20% 농가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, 같은 작목을 재배하더라도 농가 간 단위 면적당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.
- 농가의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에 따라 같은 작목을 재배하더라도 단위 면적당 소득차이가 크게 발생
 - 상위 20%인 농가는 하위 20%에 비해 적게는 2.4배(노지포도)에서 많게는 9.5배(고구마)까지 격차
 - 예를 들면 사과와 경우 수취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(1.1배) 생산기술에 따른 수량의 차이가 커(2.2배) 소득이 5배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고, 가을배추는 수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(1.1배) 수취가격의 차이가 커(2.7배) 소득격차 5배
- 경영규모별 소득을 살펴보면 단위면적당 소득이 가장 높은 영농규모는 오이 반축성, 시설호박, 딸기 축성의 경우는 0.6ha 정도, 봄감자는 1.3ha, 수박 반축성은 1.4ha, 복숭아는 2ha 수준으로 분석

- 이는 현재 기술수준에서 품목별 가장 효율적 경영이 가능한 영농규모 의미
- 일반적으로 자본과 노동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채소는 소규모 경영이, 노동력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는 노지작물(봄감자 등)은 규모화된 경영이 유리
- 한편, 재배작목에 따라 소득수준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**자본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높은 재배기술이 요구되는 시설재배** 작목들이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게 나타남.
 - 1,000만원 이상 고소득 작목은 ▲오이(축성재배) 1,674만원, ▲시설착색단고추(파프리카) 1,531만원, ▲시설감귤 1,296만원, ▲시설고추 1,081만원, ▲시설장미 1,023만원 순

<참조> 2010년 작목별 상·하위 20% 농가 소득 분석

□ 작목별 소득변동 연앙

○ 소득 증가 작목 : 46개 작목

- 10%이상 증가 작목 : 가을배추, 대파, 봄무 등 35개 작목

○ 소득 감소 작목 : 12개 작목

- 10%이상 감소 작목 : 겉보리, 맥주보리, 엽연초 등 6개 작목

□ 작목별 10a당 소득수준 연앙

○ 2010년 고소득 주요 작목

- 노지재배 : 노지부추 > 참다래 > 노지포도 순

- 시설재배 : 오이(축) > 착색단고추 > 시설감귤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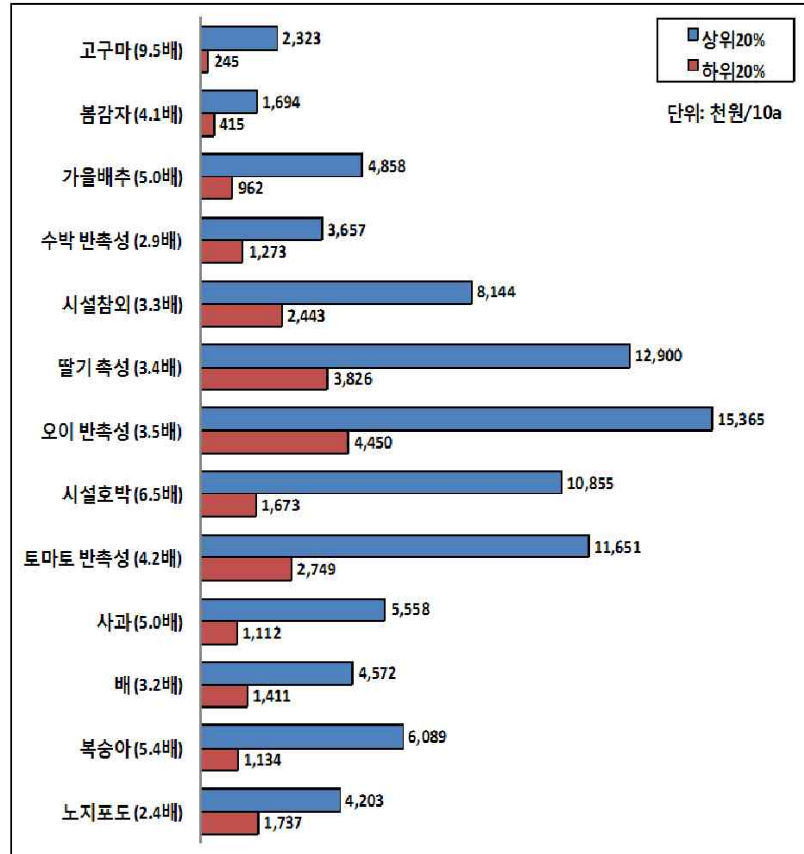
증감수준	작목수	식량작물	노지채소	시설채소	과수	특용·화훼
증가	30%이상	21	가을배추 고랭지무 대파 봄무 노지부추 가을무 양배추 당근 고랭지배추 쪽파 노지수박 노지시금치	오이(억제) 시설시금치 시설부추 시설가지 오이(반축성) 방울토마토	유자 노지감귤	참깨
	20%이상~30%미만	6		시설무 착색단고추 오이(축성)	시설감귤 복숭아	오미자
	10%이상~20%미만	8	고구마 가을감자	시설상추 토마토(반축) 시설호박	배 노지포도 사과	
	0~10%미만	11	생강	시설고추 수박(반축성) 토마토(축성) 시설배추 딸기(축성) 시설참외	단감 시설포도	느타리버섯 시설국화
감소	0~10%미만	6	봄감자 노꽃옥수수	봄배추	딸기(반축성)	인삼 시설장미
	10%이상~20%미만	3			참다래	녹차 엽연초
	20%이상~30%미만	1	쌀보리			
	30%이상	2	맥주보리 겉보리			

소득수준	작목수	식량작물	노지채소	시설채소	과수	특용 및 화훼
800만원 이상	10			오이(축) 착색단고추 시설고추 오이(반) 시설가지 토마토(축) 딸기(축)	시설감귤	느타리버섯* 시설장미
700~799	4			방울토마토 딸기(반) 토마토(반)		인삼*
600~699	2		노지부추	시설부추		
500~599	5			오이(억) 시설상추 시설호박	시설포도	시설국화
400~499	1			시설참외		
300~399	4		당근		참다래 노지포도 배	
200~299	11		쪽파 대파 생강 가을배추 노지시금치	수박(반)	사과 복숭아 노지감귤 단감	오미자
100~199	13	가을감자 고구마	노지수박 가을무 봄무 양배추 고랭지배추 고랭지무	시설시금치 시설무 시설배추	유자	녹차
100만원 미만	8	봄감자 노지꽃옥수수 겉보리 맥주보리 쌀보리	봄배추			엽연초 참깨

* 느타리버섯은 재배상 면적 330㎡기준. 인삼은 4년의 소득합계

□ 주요 작목별 상·아위 농가 소득 배율

○ 상위 20%의 소득은 하위 20%의 2.4배(노지포도)~9.5배(고구마)



* 시설참외, 사과, 배, 복숭아, 노지포도는 1.0~2.0ha 규모의 농가를 분석

** 그 외 작목은 0.2~0.4ha 규모의 농가를 분석

주간농업 농촌동향 | 종자산업법 개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

2011.08.16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종자산업법 개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《주요내용》

- ◇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육성 위주로 전부개정하고, 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규정을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정
- ◇ “종자산업법” 개정안 주요내용
 - 종자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설립,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자 지원
 - 정부에서 공급한 종자로 피해발생 시 지원 근거 마련
 - 종자의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진열·보관금지 대상에 무등록종자, 품질미표시 종자도 포함하고, 조사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도 부여
 - 종자분쟁을 위해 요청하는 시험·분석대상을 현재 보증종자에서 모든 종자로 확대하고, 「종자분쟁조정위원회」를 설치하여 신속 해결을 도모
- ◇ “식물신품종보호법” 제정안 주요내용
 - 「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」의 국제협약에 의거 2012.1월부터 품종 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
 -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벌칙을 5년이하 징역,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, 1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품종육성자 보호

□ 종자산업법 개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

- 정부에서는 '09.10월 「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」을 마련하여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2020년도까지 종자 수출액을 현재 25백만달러에서 2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종자산업육성 정책 추진
-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자,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유통관리 위주로 하는 종자산업법 전부개정(안)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규정을 분리한 「식물신품종

「보호법」 제정(안)을 8.10일부터 8.29일까지 입법예고

- 현행 종자산업법은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,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, 종자유통제도 등 성격이 다른 규정들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

○ 종자산업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

- 종자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“**종자산업진흥센터**”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, 종자관련 산업계,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 모인 **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**을 지원함으로써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며,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육성 등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
- 또한, 정부에 생산·공급하는 종자로 인한 피해발생 시, 피해비용 지원 근거 마련
- 유통종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무등록 종자업자가 생산한 종자, 생산·판매 미신고 종자, 품질 미표시 종자 등에 대해 진열·보관을 금지하고, 유통조사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·도지사에게도 부여
- 최근 늘어나는 종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요청하는 모든 종자에 대해 시험·분석을 하고 종자분쟁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「**종자분쟁조정위원회**」를 설치하는 법적근거 마련

○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

- 종자산업법 중 절차법인 **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**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**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**
-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국제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
- **품종보호권 침해죄에 대한 벌칙**을 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에서 “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”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품종육성자의 권리 강화

-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